

## 일본의 ADR 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Japanese ADR System

김 성 욱\*  
Kim, Sung-Wook

#### 목 차

- I. 서 론
- II. 일본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와 최근의 ADR법의 제정 과정
- III. 일본의 현행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의 주요내용
- IV. 결 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일본의 ADR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ADR 제도의 입법과정에서 당해 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 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해결방

---

논문접수일 : 2016. 03. 22.

심사완료일 : 2016. 04. 29.

게재확정일 : 2016. 04. 29.

\* 법학박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식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ADR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ADR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ADR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ADR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특히 우리나라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ADR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ADR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려고 하였다.

**주제어** : 일본의 ADR제도, ADR기본법, 분쟁해결제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조정, 중재

## 1. 서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대표적이지만, 기타 조정·중재·알선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일본, 독일 등 주요한 외국에서는 법원의 업무경감과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종래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입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

1) ADR 운동(ADR Movement)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ADR에 관한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98년에 연방ADR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이 제정되었고, 또한 각州에서는 주로 법원부속형 ADR에 대하여 그 절차주재

1999년에 중재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2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에서는 화해권 고결정을 도입하는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ADR기본법은 현재 부존재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ADR법을 제정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입법례와는 차이가 있다.<sup>2)</sup>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제정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한 입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1, 법률 제151호, 이하에서 ‘ADR법’이라 약칭한다)이 제정되었고, 이후 개정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술한 일본의 ADR법은 민간형 ADR기관이 화해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형 조정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5조). ADR법상의 인증제도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및 발전해 간다는 것은 곧 ADR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그러한 활성화는 사적 갈등은 물론이고 공적 갈등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ADR기관이 분쟁상황의 합리적 해결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ADR법상의 다양한 제도는 ADR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자의 자격, 절차내용이나 해결합의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하여 개별 입법화를 진행하였다. 영국에서는 1999년에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적절한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 하여금 ADR의 이용을 장려하도록 법원에게 의무를 부여한 새로운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을 제정하였다. 독일에서는 1999년에 소액사건, 隣人紛爭, 명예훼손분쟁 등에 대하여 주법에 따라 조정전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의 분쟁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r Förderung der außergerichtlichen Streitbeilegung)이 민사소송법시행법(Gesetz, betreffend die Einführung der Zivilprozeßordnung)의 일부(§15 a EGZPO)로 제정되었다(전병서,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132면).

- 2)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재의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계간중재」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이강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 임동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정영화, “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법원연계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와 최근에 제정된 ADR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II. 일본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와 최근의 ADR법의 제정과정

### 1. 접근방법

토론과 합의문화가 발달된 미국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강한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법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특유한 법 문화의 차이는 인증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ADR법의 제정과정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 즉 나이사이(내제: 内濟) 제도가 이해당사자 사이에 발생하였던 갈등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운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에, 최근에 대체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의 ADR법이 어떠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제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sup>3)</sup>

### 2. 일본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

3) 일본에서의 ADR제도에 관한 중래의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内堀宏達,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概要”, 「法律のひろば」, ぎょうせい, 2005; 大平祐一, “内濟と裁判”, 藤田覺編, 近世法の再檢討—歴史學と法史學の對話, 山川出版社, 2005; 本多俊雄, “大阪地裁建築・調停事件における現況と課題”, 判例タイムズ 1381, 2012; 山本和彦, “認證ADR事業者に對するアンケート結果の概要”,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西村安博前近代社會における傳統法文化の一斑—和與と内濟をめぐって—法政理論第 32卷 第2号, 1999; 深山卓也, “法務省からみたADR法の現狀”,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原子力損害賠償實務研究會編, 「原子力損害賠償の實務」, 民事法研究會, 2011; 早川吉尙 外 編, 「ADRの基本的視座」, 不磨書房, 2004; 仲裁ADR法學會編,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出井直樹, “原子力損害賠償ADRについて”, 「仲裁とADR」 7號, 仲裁ADR法學會, 2012.

## (1) 나이사이(내제: 內濟) 제도의 출현

지금으로부터 약 150~400년 전, 일본은 에도 막부(江戸幕府)가 통치했던 시대이었다(1603~1868년).<sup>4)</sup> 당시의 사회는 혈연 공동체 또는 촌락 공동체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대이었다. 이러한 에도시대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재판에 의한 판결(裁許)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와 화해를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나이사이(내제: 內濟) 제도가 운용되었다.<sup>5)</sup> 일본에서는 역사학이나 법제사의 관점에서 나이사이(내제: 內濟) 제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 되어왔지만, 최근에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특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을 모색하는 가운데,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도 에도시대 나이사이 시스템에 대하여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sup>6)</sup>

나이사이(내제: 內濟)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중재자인 제3자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 합의 등을 이끌어 내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sup>7)</sup> 특히 분쟁해결 과정에서 해결에 이르기까지 제3자에 의한 알선절차를 扱(급, 아츠카이) 또는 取扱(취급), 嚮(애)라고 한다. 민사와 관련한 나이사이 대상사건은 오늘날의 법제상에서는 민법상 화해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판외의 제3자가 분쟁해결에 관련한다면 조정에 의한 화해에 가까울 것이고, 더욱이 그 제3자가 관리(官吏)라면 실제로는 조정 보다 오히려 중재에 가까울 것이다. 다만, 나이사이(내제: 內濟)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이 제3자에게 일임하는 것보다도 당사자 쌍방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알선하여 합의에 이

4) 일본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한 것이다. 안성훈 외 3인,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45-158면.

5) 일본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인 나이사이(내제: 內濟)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안성훈·오카자키 마유미, “나이사이(內濟)제도에 대한 소고-일본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6) 大平祐一, “內濟と裁判”, 藤田覺編, 近世法の再検討—歴史學と法史學の對話, 山川出版社, 2005, 5面.

7) 大平祐一, “內濟と裁判”, 藤田覺編, 近世法の再検討—歴史學と法史學の對話, 15面

르게 하는 것에 제3자의 존재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 의한 화해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sup>8)</sup> 에도시대는 당사자사이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이사이(내제: 內濟) 제도가 통치자인 에도 막부로부터 장려되었고, 상당히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었다.<sup>9)</sup> 나이사이(내제: 內濟)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즉 당사자 간의 합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분쟁해결 방법은 에도시대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즉 율령(律令) 시대에는 나이사이(내제: 內濟)를 사화(私和)라고 불리었고,<sup>10)</sup> 특히 민사 사건에 한정한다면 카마쿠라(鎌倉) 시대부터 무로마치(室町) 시대(12세기 후반~16세기)에 걸쳐 주로 토지 소유에 관한 분쟁(所務沙汰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화여(和與)라고 하는 당사자 간(혹은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었다. 나이사이(내제: 內濟)는 이러한 사화나 화여라는 분쟁해결 방법의 계보를 잇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sup>11)</sup> 또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사이(내제: 內濟)의 대상사건이 되는 것은 민사는 물론 형사사건도 이에 해당하였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사이(내제: 內濟)의 대상이 되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나이사이(내제: 內濟)의 대상이 되었다.<sup>12)</sup>

## (2) 나이사이(내제: 內濟) 제도의 유형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나이사이(내제: 內濟)가 기능하는 시기, 즉, 언제 나이사이(내제: 內濟)가 시작되는지를 기준으로 나이사이(내제: 內濟)의 형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8) 大竹秀男, “近世水利訴訟法における内濟の原則”, 法制史研究 第1号, 1952, 206-207面.

9) 大平祐一, “内濟と裁判”, 藤田覺編, 近世法の再検討—歴史學と法史學の對話, 13面.

10) 牧健二의 논문에서는 재판의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의미로 私和라는 말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로 고대 중국의 賊盜律에는 凡祖父母父母外祖父母, 及夫爲人所殺, 私和者徒三年…… 이라고 하는 조문을 제시하고 있다

11) 西村安博前近代社會における伝統法文化の一斑—和與と内濟をめぐって— 法政理論 第32卷 第2号, 1999.

12) 안성훈 외 3인,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46.

수 있다. 첫째는 소송 제기전의 나이사이(내제: 內濟)이다. 즉, 민사사건의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사는 마을 관리(官吏)나 장로(長老) 혹은 조정인인 아츠카이닌(扱人) 등의 제3자가 개입하면서 분쟁당사자 쌍방이 비공식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이다.<sup>13)</sup> 둘째는 소송 제기후의 나이사이(내제: 內濟)이다. 이것은 당사자의 소송 제기 후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가 나이사이(내제: 內濟)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판단을 당사자에게 권고 혹은 장려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대부분의 경우, 제3자를 개입시켜)에 합의를 형성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형태이다.<sup>14)</sup> 이와 같이, 에도시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후에 관계없이 나이사이(내제: 內濟)는 언제라도 기능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재판 심리 과정 중에 재판 관리에 의해서 항상 나이사이(내제: 內濟)가 장려되고 있었다.<sup>15)</sup>

### (3) 나이사이(내제: 內濟) 제도의 대상사건

나이사이(내제: 內濟) 제도의 대상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도시대는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법이나 중국법과 같이, 민사·형사사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sup>16)</sup> 그렇지만 채권·채무 관계나 토지를 둘러싼 분쟁 등, 현재에도 전형적인 민사사건으로서 볼 수 있는 사건은 대개 출입물(出入物:

13) 에도시대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시, 제3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을 특히 相對라고 불렀다(안성훈 외 3인,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P.147); 일반적으로 나이사이(내제: 內濟)라고 하면 소송 제기 후의 나이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4) 內濟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심지이었던 江戸(현재의 東京을 비롯한 關東地方)와 경제적 중심지이었던 上方(현재의 京都·大阪를 중심으로 한 畿內地方)에서는 법문화(특히 거래법이나 생활에 밀접한 법관습—토지나 산림, 水利에 관한 법관습—)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內濟의 형태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다만, 재판외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5) 大竹秀男, “近世水利訴訟法における内濟の原則”, 188面

16) 예를 들어, 근대법과 같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엄격한 구별은 없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의해서 소멸하거나, 반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었다(服藤弘司, 『刑事法と民事法』, 創文社, 1983, 28面)

데이리모노(公事出入))라고 하고, 살인이나 상해, 절도 등 현대의 전형적인 형사사건은 대개 吟味物(吟味物: 긴미모노)라고 하여 재판절차에 차이를 두면서 양자를 구별하였다.<sup>17)</sup>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출입물(出入物)의 경우는 나이사이(내제: 內濟)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형사사건인 음미물(吟味物)의 경우에도 일부는 나이사이(내제: 內濟)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었다.

### 3. 일본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대체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일본의 ADR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ADR법의 제정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의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종래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내각에 설치하였다. 이후 2001년 6월 사법제도개혁심의회로부터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2001년 6월 제출한 ‘일본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는 “ADR이 국민에게 재판과 함께 매력적인 분쟁해결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확충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서 종합적인 ADR제도 기반의 정비를 목적으로 이른바 ADR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01년 11월 사법제도개혁추진법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고, 이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사무국에 “ADR 검토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ADR법에 관한 검토작업이 시작되었

17) 出入物과 吟味物은, 律令 이래 이용되어온 聽訟과 斷獄이라는 구분의 계보를 계수한 것으로, 에도시대에 접어들어 出入物과 吟味物라는 말로 대체되어 정착되었다(服藤弘司, 『刑事法と民事法』, 創文社, 1983, 25面) 또한 服藤弘司는 聞伝奏書 제10권에서 公事出入と吟味物差別之事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出入物과 吟味物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피고)에게 답신서(변명서)의 제출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 즉, 吟味物에서는 상대방에게 답신서의 제출을 인정되지 않고 奉行所(재판 관아)가 직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범인을 심리한 반면, 出入物에서는 상대방의 변명을 듣기 위해 답신서를 제출시켜서 이것에 의해 원고·피고 간에 합의가 되면 內濟가 인정되고, 또한 소송의 취하(願下げ)도 허용되었다 라고 지적한다(服藤弘司, 『刑事法と民事法』, 創文社, 1983, 36-37面).

다.<sup>18)</sup> ADR 검토회는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ADR의 제도기반의 정비를 중심으로 2002년 2월 5일부터 2004년 11월 8일까지 약 2년 10개월에 걸쳐 총 38회의 검토회를 개최하여 ADR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sup>19)</sup>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ADR 검토회는 ADR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 ADR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 ② ADR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DR 기관이나 ADR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의 명시, ③ ADR에 시효중단효력, 집행력부여 등의 법적효과 부여, ④ ADR에 관한 제도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ADR의 이용촉진 및 재판절차와의 연계촉진에 이바지하는 법제 정비, ⑤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조정·알선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규칙을 정하는 법제를 정비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DR 검토회의 오랜 검토 끝에 2003. 8. ADR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를 정비할 경우 깊이 있게 논의 되어야 할 41개 항목의 논점을 정리한 “종합적인 ADR 제도기반의 정비에 관하여”라는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축소되었다.<sup>20)</sup> ADR 검토회는 2004. 10. 12.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같은 해 11. 19.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2. 1. 공포되었다(법률 제151호). 다만 부칙 제1조가 그 시행시기에 관해서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2007. 4. 1.부터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18) 검토회의 구성원은 총 11명으로서 좌장은 靑山善充 교수였고, 재판관과 변호사 각 1명, 노동계 1명, 기업법무담당자와 회사 대표이사 각 1명, 山本和彦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었다(최건호, “일본의 ADR 제도”,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291면).

19) 전병서,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38면.

20) 예컨대,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에 따른 ‘조정절차법’의 입법화는 모두 보류되었다. 또한, 인증받은 ADR의 법적 효과에 관해서도, 화해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나 법원에 의한 ADR이용권장규정은 배제되었다(김상찬, “일본의 ADR 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2006, 131면).

### Ⅲ. 일본의 현행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의 주요내용

#### 1. 입법목적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ADR제도는 재판외의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게 활성화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ADR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ADR기구를 운영하고 또한 용이하게 당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및 행정적 기반을 형성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ADR기구와 민간이 운영하는 ADR기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ADR제도를 그 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ADR기구가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DR법이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법률의 제정과정에서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의 ADR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일본의 ADR법<sup>21)</sup>은 전술한 점을 반영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은 분쟁해결을 도모하는데 어울리는 절차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적절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기본이념 등을 정함과 동시에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제도를 설치하고, 시효중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그 편의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 일본의 ADR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제1장 총칙, 제2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 제3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4장 잡칙, 제5장 별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ADR법의 시행은

2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1, 법률 제151호)

공포일로부터 2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칙 제1조), 또한 법 시행 5년 경과 후에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 2. 일본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의 주요내용

### (1) 목적

일본의 ADR법은 그 입법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내외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sup>22)</sup>가, 제3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분쟁의 실정에 맞는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제도를 두고, 더불어 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그 편의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그 해결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절차를 용이하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이익의 적절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일본의 ADR법은 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적절하게 실현시켜 주는 것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 (2)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

일본의 ADR법은 기본이념에 대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는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분쟁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적절하게 실시되고 또한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분쟁의 실정

22)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분쟁의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에 맞는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제3조 제1항). 재판의 분쟁해결절차를 취급하는 자는 전술한 기본이념에 따라 서로 제휴를 도모하면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ADR법은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국가는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내외의 동향, 그 이용 상황,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지방공공단체는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의 보급이 주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면서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인증제도

#### 1) 도입배경

일본 ADR법에 의하면,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업무로서 취급하는 자<sup>23)</sup>는, 그 업무에 관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제5조). 특히 민간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이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절차선택의 표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시효중단효 등 법적 효과의 부여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를 향상시키고 이용의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ADR법에서는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그 업무가 그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하며, 그 확인을 받은 업무를 위와 같은 조치 및 특례의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sup>24)</sup>

23)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4)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은 전체 36차의 회의 중에 29차 회의이었다. 그 전에는 사전인증제도를 두면 국가가 ADR기관을 사실상 선별하는 결과가 되어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ADR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강했으나, ADR에 시효중단이나 소송절차의 증지와 같은 특별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할 때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ADR기관이 행한 ADR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술한 인증제도는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수단 중의 하나이며, 인증신청 여부는 사업자의 임의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sup>25)</sup> 인증제도가 갖는 의미는 개별적인 ADR기관에 대한 신뢰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 ADR의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개별 ADR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으므로 인증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 2) 인증대상

일본의 ADR법상의 인증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법무대신이 ADR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제5조). 인증을 받지 않고 ADR을 취급할지 여부는 민간사업자 스스로 판단하면 되고, 종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불이익도 부과되어 있지 않다. 인증을 받는 주체는 민간분쟁해결절차<sup>27)</sup>를 업무로서 취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司法型·行政型 ADR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仲裁에 관하여는 중재법에 의하여 시효중단 등의 법적 효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중재의 업무는 ADR법에 의한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 3) 인증기준

일본의 ADR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는 의견이 반복되었고, 결국 인증을 받은 ADR기관을 전제로 시효중단효 등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 25) 内堀宏達,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概要”, 「法律のひろば」, ぎょうせい, 2005, 6面.
- 26) 물론 이러한 인증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또한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 적당할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ADR의 선택은 성질상 시장에 맡겨야 하고 각 ADR기관이 서비스의 경쟁을 통하여 자연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결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서비스 질에 대한 판정이 곤란하며, 국민이 ADR에 충분히 익숙해 있지 않는 단계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인증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된 단계에서는 민간차원에서 ADR기관을 인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山本和彦, 前掲 “裁判外紛争解決手段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今後の課題”, 19面).
- 27) 민간사업자가, 분쟁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당 분쟁당사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더잡아 화해의 중개를 하는 재판의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있다(소극적 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 우선 절차실시자<sup>28)</sup>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의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절차실시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분쟁에 관한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실시자가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법서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민간 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야만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제6조 제5호), 이렇게 전문적인 법적 지식의 보충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보수를 수령하더라도 변호사법 제72조<sup>29)</sup>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인증의 기준으로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인 수비 의무(守秘義務: 제6조 제11호, 제14호), 보수의 정당성(제6조 제15호) 등이 요구된다.

일본 ADR법 제6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6조). 법무대신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취급할 해당 신청에 관련된 민간 분쟁해결절차의 업무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며, 또한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 경리적 기초를 가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인증을 한다.

1. 그 전문적인 지견(知見)을 활용하여 화해의 중개를 하는 분쟁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것
2. 전호(前號)의 분쟁의 범위에 대응하여 개개의 민간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화해의 중개를 하는 데 적합한 사람을 절차실시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
3. 절차실시자의 선임방법 및 절차실시자가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기타 민간분쟁해결절차의 공정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

28)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화해의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9) 변호사법 제72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자는,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또는 화해, 기타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業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경우 해당 절차실시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4. 신청자의 실질적 지배자 등<sup>30)</sup> 또는 신청자의 자회사 등<sup>31)</sup>을 분쟁당사자로 하는 분쟁에 관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실질적 지배자 등 또는 신청자가 절차실시자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5. 절차실시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司法書士法(昭和 25년 법률 제197호) 제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분쟁에 관한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실시자가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법서사인 경우를 제외한다<sup>32)</sup>)에,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을 것<sup>33)</sup>

6.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할 때에 하는 통지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7. 민간분쟁해결절차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표준적인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것

8. 분쟁당사자가 신청자에 대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의 요건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

9. 신청자가 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前號의 의뢰를 받았을 경우, 분쟁의

30) 신청자의 주식의 소유, 신청자에 대한 용자 기타 사유를 통하여 신청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1) 신청자가 주식의 소유 기타 사유를 통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2) 사법서사법 제3조 ① 사법서사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아래의 사무를 행함을 業으로 한다. 7. 민사에 관한 분쟁(간이재판소에서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분쟁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액(140만円)을 넘지 않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또는 재판외의 화해에 관하여 대리하는 일. ② 前項 제6호 및 제7호가 규정하는 업무(이하 '간재(簡裁)소송대리관계업무'라고 한다)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법서사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1. 간재(簡裁)소송대리관계업무에 관하여 法務省令으로 정한 법인이 실시하는 연수에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일 것. 2. 前號에 규정한 자의 신청에 터잡아 법무대신이 簡裁소송대리관계업무를 취급함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일 것. 3. 사법서사회의 회원일 것.

33) 이는 日本辯護士聯合會가 제안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adr/dai14/14siryou1.pdf](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adr/dai14/14siryou1.pdf) 참조.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분쟁의 다른 당사자가 이에 응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을 것

10.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의 보관, 반환 기타 취급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11.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진술되는 의견 또는 제출되거나 제시되는 자료에 포함된 분쟁당사자 또는 제3자의 비밀에 관하여 해당 비밀의 성질에 따라 이를 적절히 보관·유지하기 위한 취급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제16조가 규정하는 절차실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러한 비밀에 대하여도 같다.

12. 분쟁당사자가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요건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

13. 절차실시자가 민간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종료하고 그 취지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을 것

14. 신청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역원(役員),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및 절차실시자들이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지득(知得)한 비밀을 확실히 보관·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을 것

15. 신청자(절차실시자를 포함한다)가 지급받는 보수 또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산정방법,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을 것

16. 신청자가 취급하는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대한 불만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야 한다.

#### 4) 인증절차

일본의 ADR법에 의하면, 인증의 신청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2.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전 2

호가 정하는 것 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그리고 전술한 신청서에는 1.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그 밖의 기본약관을 기재한 서류 2. 그 신청에 관련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을 기재한 서류 3. 그 신청에 관련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한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 4. 신청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그 밖의 해당 신청에 관련된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리적 기초를 가졌음을 밝히는 서류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5. 전 각호 이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인증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한편, 법무대신은 인증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자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때는 이러한 법인을 소관하는 대신과, 신청자가 설립에 관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일 때는 그 허가 또는 인가를 한 대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와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법무대신이 인증을 하려고 할 때는 제7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해당 사유(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8호에 관련된 사유에 한한다)의 유무에 대하여 경찰청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제2항). 또한 법무대신은 전술한 처분 또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심사참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제3항). 인증심사참여원에 대하여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무성에는 인증의 신청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변경의 인증 신청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그리고 인증의 취소 및 해당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무대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참여원 약간 명을 둔다(제10조 제1항). 인증심사참여원은 행정불복심사법(소화 37년 법률 제160호)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같

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인 또는 참가인의 의견진술에 관련된 절차에 입회하고, 또한 이러한 자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인증심사참여원은 민간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제10조 제3항). 인증심사참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인증심사참여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제10조 제5항).”

#### 5) 인증의 공시 및 변경

일본의 ADR법에 의하면,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업무로서 취급하는 자(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제5조). 만약 법무대신이 전술한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쟁해결사업자<sup>34)</sup>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사업자라는 취지 및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에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또는 그 실시방법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법무대신의 변경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는 변경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제12조 제1항). 그리고 변경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전술한 변경신청서에는 변경 후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을 기재한 서류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34)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제5조의 인증을 받아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인증분쟁해결절차’는 제5조의 인증을 받아 업무로서 취급하는 민간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3호).

## 6)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의무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계약의 체결에 앞서 절차실시자의 선임, 분쟁당사자가 지불하는 보수 또는 비용, 표준적 절차진행 등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제14조). 또한 실시한 절차에 관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제16조).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폭력단원 등을 업무보조자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15조). 법무대신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거나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제21조), 권고(제22조), 인증취소(제23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민간분쟁해결절차가 당사자·사업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터잡은 것이며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노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업무의 특성을 배려하여야 한다(제24조).

## (4) 법적 효과

일본의 ADR법에 의하면,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귀속된다.

## 1) 명칭에 관한 독점권

일본의 ADR법에 의하면,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업무로서 취급하는 자(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제5조). 만약 법무대신이 전술한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사업자라는 취지 및 그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내용 및 그 실시방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에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그러나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인증분쟁해결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쓰거나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인증분쟁해결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3항). 만약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 제3항).

## 2) 시효의 중단

일본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1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절차, 중재절차 및 법원의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들 절차의 개시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sup>35)</sup> 그러나 재판이외의 ADR(중재 제외)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과밖에 없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sup>36)</sup> 따라서 최고에 대한 잠정적인 시효중단이 인정되는 6개월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절차 등으로 이행시킬 수밖에 없다.<sup>37)</sup> 또한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ADR에 의한 분쟁해결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ADR절차에 의한 시효중단조치가 없으면 ADR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이미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 결과로 되거나 시효기간에 근접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안심하고 ADR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ADR에 대한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ADR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둬으로써 시효완성을 염려함이 없이 ADR에 의한 분쟁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여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촉진한다는 ADR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

35) 민법 제151조 화해신청 또는 민사조정법, 가사심판법에 의한 조정신청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6) 다만, ADR을 신청하는 것이 민법상 시효중단사유 가운데 하나인 催告에 해당할 수는 있으므로 催告에 의한 잠정적 시효중단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일본민법 제153조 참조).

37) ADR절차가 계속 진행 중일 때에는 최고계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과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었으나, 즉결화해신청이나 민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최고계속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이 고려되었으며, 민법에 비추어 정지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홍성규, “일본 ADR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184면).

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 ADR檢討會에서는, 시효중단(정지)에 관한 제도를 창설할 경우, 시효의 中斷으로 할 것인가 停止로 할 것인가, ADR의 개시 자체를 독자적인 시효중단사유로 할 것인가 기존의 중단사유의 효력발생시기로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시효중단 방법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행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적 해결을 하였다. “①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절차실시자가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종료하였을 경우,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해당 분쟁당사자가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의 청구시<sup>38)</sup>에 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른바 個別勞動紛爭解決促進法<sup>39)</sup>type).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또한 해당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날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던 분쟁이 있었던 경우,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해당 분쟁당사자가 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9조 각 호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 중 빠른 날(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사망에 의하여 제5조의 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도 전항과 같다. ③ 제5조의 인증이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고 또한 그 취소처분일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고 있었던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해당 분쟁당사자가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

38) ADR법이 시효중단효가 소급하는 시점을 인증분쟁해결절차 개시시점이 아니라 ‘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의 請求時’로 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39)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촉진에 관한 법률(個別勞動關係紛爭の解決の促進に關する法律) 제15조 알선위원은 알선에 관계된 분쟁에 관하여 알선에 의해서는 분쟁의 해결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선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알선의 신청을 한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알선의 목적이었던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알선의 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을 안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분쟁 해결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도 제1항 같다.” 이렇게 현행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증을 받은 분쟁해결절차(인증분쟁해결절차)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로 이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청구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3) 소송절차의 중지

일본의 종래 소송절차상으로는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재판소 외의 ADR과 소송절차가 병행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상의 근거가 없다.<sup>40)</sup>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이더라도 소의 취하에 의한 불이익을 받거나 절차를 이중으로 진행하는 부담 없이 ADR에 의한 화해교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ADR을 신청한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제도의 특례를 두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실무상으로는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사이에 재판소 외에서 ADR에 의한 화해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기일을 추정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소송절차의 중지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 거부감을 갖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계, 적정·신속한 심리의 실현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구조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과 재판소 외의 ADR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재판소의 재량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한도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현행 ADR법도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즉 분쟁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해당 분쟁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해당 분쟁당사자 사이에 인증분쟁해결절차

40) 재판소 조정(민사조정,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다(민사조정규칙 제5조, 가사심판규칙 제130조 참조).

가 실시되고 있거나 기타 해당 분쟁당사자 사이에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당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고 해당 분쟁당사자의 공동의 신청이 있을 때는, 수소재판소는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중지기간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분쟁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ADR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소재판소는 언제라도 위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제26조 제2항), 소송절차의 중지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및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조 제3항).

#### 4)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특칙

일본의 현행제도는 일정한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재판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조정법 제24조의2<sup>41)</sup>), 가사심판법 제18조<sup>42)</sup>). 분쟁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사정 등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1차적 화해교섭을 재판소 외의 ADR절차에서 시도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소 제기 전에 재판소 외의 ADR을 이용하여 화해교섭을 시도한 경우에도 다시 재판소의 조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와 같은 절차

41) 민사조정법 제24조의2 ① 借地借家法(平成 3년 법률 제90호)제11조의 地代나 토지 차입액의 증감청구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건물 차입액의 증감청구에 관한 사건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수소재판소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재판소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가사심판법 제17조 가정재판소는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기타 일반적으로 가정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甲類에 규정하는 심판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심판법 제18조 ①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정재판소에 조정의 신청을 해야 한다. ② 前項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함이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 사건을 가정재판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소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 부담 없이 ADR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ADR법에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증분쟁해결절차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즉 일본의 ADR법에 의하면, “민사조정법(소화 26년 법률 제222호) 제24조의2 제1항의 사건 또는 가사심판법(소화 22년 법률 제152호) 제18조 제1항의사건(같은 법 제23조의 사건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소의 제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고, 또한 해당 의뢰에 근거하여 실시된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24조의2 또는 가사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소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예를 들어 地代 또는 토지 차임액의 증감청구, 건물 차임액의 증감청구에 관한 사건(민사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또는 人事에 관한 소송사건이나 가사사건(가사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였고 해당 의뢰에 터잡아 실시된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사사건 중 혼인 또는 양자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사건, 협의이혼이나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인지, 인지의 무효나 취소, 민법 제773조의 규정에 의하여 父를 정하는 사건, 친생부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한 사건(이상 가사심판법 제23조<sup>43)</sup>의 사건임)에 관하여는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7

43) 가사심판법 제23조 ① 혼인 또는 양자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사건의 조정위원회 조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의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당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사조정위원의 의견을 듣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혼인 또는 양자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하여 당해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은 협의이혼이나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인지, 인지의 무효나 취소, 민법 제773조의 규정에 의하여 父를 정하는 사건, 친생부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한 사건의 조정위원회 조정에 준용한다.

조). 위 사건들에 관하여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된 것은, 가사사건 중 人事에 관한 소송사건은 그 결과가 신분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본질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가정재판소가 행하는 가사조정에서, 재판소가, 형성된 합의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5) 분쟁해결로 인한 보수지급과 일본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

일본의 ADR법에 의하면,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의 절차실시자를 포함한다)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제28조). 따라서 ADR법에 기하여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인증분쟁해결사업자(절차실시자를 포함한다)도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취급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의 예외를 규정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3. 입법적 시사점

일본의 ADR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입법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ADR에 의한 분쟁해결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률전문가보다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면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ADR에 의한 분쟁해결은 반드시 법률 또는 종래의 관례에만 기속되는 분쟁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조정위원 등이 되어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의 절차실시자를 포함한다)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이 규정은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의 예외를 규정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기하여 변호사 또는 변호사

법인이 아닌 인증분쟁해결사업자(절차실시자를 포함한다)도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취급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ADR 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보수문제와 변호사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형 ADR기관이 화해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형 조정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5조). 그런데 전술한 인증제도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및 발전해 간다는 것은 ADR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활성화는 사적 갈등은 물론이고 공적 갈등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ADR기관이 분쟁상황의 합리적 해결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ADR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도 종적·횡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ADR법에 의하면, “민사조정법(소화 26년 법률 제222호) 제24조의2 제1항의 사건 또는 가사심판법(소화 22년 법률 제152호) 제18조 제1항의 사건(같은 법 제23조의 사건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소의 제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고, 또한 해당 의뢰에 근거하여 실시된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할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24조의2 또는 가사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소재판소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래 ADR기본법을 제정하고, 당해 법률에 관련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는 관련 제도의 도입이라는 형식적 모습의 완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해당사자사이의 의식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의 성립 및 범위의 문제는 ADR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ADR법의 주요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술한 것처럼, 최근에 이르러 일본, 독일 등 주요한 외국에서는 법원의 업무경감과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종래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입법화 경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제정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한 입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ADR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입법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에 중재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2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도입하는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ADR기본법은 현재 부존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DR은 국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ADR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ADR기구를 운영하고 또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형성해 주는 역할과 책무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래 우리나라에 ADR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것은 민간부문(민간사업자)에서 ADR이 운영 및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계간중재』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 김상찬, “일본의 ADR 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2006.
- 안성훈 외 3인,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 안성훈·오카자키 마유미, “나이사이(內濟)제도에 대한 소고-일본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 이강빈,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 임동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 전병서,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 정영화, “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법원연계 민사조정 의 활성화 방안”,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최근호, “일본의 ADR 제도”,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홍성규, “일본 ADR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 황승태,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 内堀宏達,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概要”, 「法律のひろば」, ぎょうせい, 2005,
- 大竹秀男, “近世水利訴訟法における内濟の原則”, 法制史研究 第1号, 1952
- 大平祐一, “内濟と裁判”, 藤田覺編, 近世法の再検討—歴史學と法史學の對話, 山川出版社, 2005.
- 服藤弘司, 「刑事法と民事法」, 創文社, 1983.
- 本多俊雄, “大阪地裁建築・調停事件における現況と課題”, 判例タイムズ 1381, 2012.
- 山本和彦, “認證ADR事業者に對するアンケート結果の概要”, 「仲裁とADR」 第

- 5號, 仲裁ADR協會, 2010.
-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 西村安博前近代社會における伝統法文化の一斑—和興と内濟をめぐって—法政理論 第32卷 第2号, 1999.
- 深山卓也, “法務省からみたADR法の現状”,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力損害賠償の實務」, 民事法研究會, 2011.
- 原子力損害賠償實務研究會編, 「原子内堀宏達」, “裁判外紛争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概要”, 「法律のひろば」, ぎょうせい, 2005.
- 早川吉尙 外 編, 「ADRの基本的視座」, 不磨書房, 2004.
- 仲裁ADR法學會編,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 出井直樹, “原子力損害賠償ADRについて”, 「仲裁とADR」 7號, 仲裁ADR法學會, 2012.

[Abstract]

## A Study on the Japanese ADR System

Kim, Sung-Wook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Japanese ADR System'.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ADR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ADR system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In principle, disputes occurring between private parties are to be resolved by court adjudication. Due to the cost and time involved,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been introduced to either supplement or substitute court adjudication. Since ADR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DR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ADR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DR system in Japan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DR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Japanese ADR System.

**Key words** : Japanese ADR System, ADR fundamental law,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bitration, mediation